



TaxNewsFlash - Transfer Pricing

[Website](#) | [Archive](#) | [Contact](#)

Transfer Pricing Newsletter

삼정 KPMG 이전가격본부(TP)는 글로벌 이전가격 이슈를 공유하고자 KPMG 에서 발간되는 TaxNewsFlash 발간물 및 Bloomberg 에서 발간되는 BNA Report 를 한국어로 요약하여 월 2회 제공합니다. 밑줄 친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ustralia: ATO guideline on cross-border related-party financing arrangements, transactions](#)

호주: 국외특수관계자 간 금융거래에 관한 과세당국의 지침 발표

호주 과세당국(Australian Taxation Office, 이하 "ATO")은 국외특수관계자 간 금융거래관련 조세 문제에 대한 접근방식을 다룬 실질적 규제 지침(The Practical Compliance Guideline, 이하 "PCG")을 발표하였습니다.

PCG 2017/4: 국외특수관계자 간 금융거래관련 조세 문제에 대한 ATO의 규제 접근법은 ATO가 2017년 5월에 협의를 위해 작성한 초안을 따르고 있으며, 발효일은 2017년 7월 1일이었습니다. 해당 지침은 기존의 금융거래 및 새로운 금융 거래에 모두 적용됩니다.

조세위험범위 (Tax risk spectrum)

ATO는 초안에서 협의한대로 색으로 구분된 조세위험범위(흰색, 녹색, 청색, 노란색, 황색 및 적색 영역)을 수정하였습니다. ATO는 제3자 채무 또는 글로벌 자금조달 비용(외부 부채 조달 비용), 이자 보상 비율, 담보, 후순위 부채, 복합금융상품을 포함한 고위험 상품의 존재 등과 같은 요소를 참고로 하여 납세자를 점수화 합니다. 이러한 요소는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위험등급은 1차원적 집계 점수가 아닌 "가격"과 "동기부여"라는 측면에서 점수화된 납세자의 상황을 고려하게 됩니다.

삼정 KPMG 이전가격본부
7 February 2018

KEY CONTACTS

[강길원 전무이사\(본부장\)](#)

(Tel: 02-2112-0907)

[김상훈 상무이사](#)

(Tel: 02-2112-7939)

[백승목 상무이사](#)

(Tel: 02-2112-0982)

- 매트릭스에는 15 개의 상자가 있으며 그 중 하나는 녹색(낮은 위험) 등급이고 9개는 황색(높은 위험) 및 빨간색(매우 높은 위험) 등급입니다.
- ATO는 높은 위험도 이상의 등급이 우선 순위 검토 대상이 될 것임을 시사하였습니다.
- 보통 위험 등급은 ATO가 납세자와 협력하고 차이점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검토 대상이 되는 등급입니다.

초안과의 차이점

ATO는 해당 지침의 초안과 관련하여 몇 가지 용인되는 사항을 내놓았습니다. 예를 들면, 보다 수용 가능한 이자보상비율 지표가 존재하고, 납세자가 본사 또는 재무부서의 소재지에 위치한 경우 납세자는 채권자의 조세관할지역의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침초안과 비교해 볼 때 최종안은 일반적으로 부채조달비용이 외부부채조달비용과 다른 경우 납세자를 고위험 범주에 포함시킵니다. 예를 들면, 지침 초안에서는 후순위 부채로 분류되어 있고, 외부부채조달비용보다 51-100bp 높게 부채조달비용이 책정되어 있으며, 다른 요소에서 점수를 받지 못한 특수관계자 간 부채는 녹색등급으로 기록됩니다. 이러한 국외특수관계자 간 부채는 최종 지침하에서는 중간 위험보다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Brazil: Changes to “tax haven” and “privileged tax regimes” lists

브라질: 조세 피난처(tax haven)와 특혜과세체제(privileged tax regimes) 목록 수정

브라질은 코스타리카, 마데이라 및 싱가포르가 "조세 피난처" 목록에서 제외되었다고 2017 년 12 월 말 관보를 통해 발표하였습니다. 코스타리카, 마데이라 및 싱가포르를 조세피난처 지정 목록에서 제외함으로써 브라질에서 해당 지역으로 송금 시 (조세 피난처 지정 국가로의 송금에 대한 원천세율이 25%인 것과는 대조적으로) 15%의 원천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 세 지역은 일반적인 조세 피난처 목록에서 제외되지만, 해당 지역 내의 특정 과세 체제는 아래와 같이 “특혜 과세 체제(privileged tax regimes)”로 분류됩니다.

- 코스타리카의 자유지역체제(free zone regime; zonas franca)
- 포르투갈 마데이라의 국제업무센터(international business centers of Madeira; Centro Internacional de Negócios da Madeira – CINM)

- 싱가포르에서 적용되는 일부 저세율 체제

상기와 같은 특혜과세 체제가 적용되는 법인과외의 거래는 거래당사자 간 지분관계와 상관없이 브라질의 이전가격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전가격 규정은 (과소자본세제 상) 과다차입금 손금부인과 기타 보다 엄격한 규정들에 더해 추가적으로 적용됩니다.

브라질의 다국적 기업이 특혜과세 체제의 적용을 받는 해외 법인에 투자하는 경우 연결납세 금지, 현금주의 하의 관계사 이익에 대한 비과세 및 최대 9%까지 추정세액 불공제 등을 포함하는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Google's 'Dutch Sandwich' Shielded 16 Billion Euros from Tax \(Bloomberg TP Report vol. 27, no.1 pg. 21\)](#)

구글, 더치 샌드위치(Dutch Sandwich) 기법으로 160억 유로 세금 회피

구글은 2016년 소득의 159억 유로(약 20조 4천억 원)를 법인세가 없는 북대서양의 섬 버뮤다로 이전하였으며 세금 회피 금액만 약 37억 달러(약 4조 원)이었습니다.

구글은 국제적으로 발생한 소득의 조세회피를 위하여 "더블 아이리시(Double Irish)" 및 "더치 샌드위치(Dutch sandwich)"라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아일랜드 법인의 수익을 직원이 없는 네덜란드 법인으로 보낸 후, 다른 아일랜드에 등록되어 있는 다른 자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버뮤다로 보내는 것입니다.

12월 22일 네덜란드 상공회의소(Dutch Chamber of Commerce)에 제출한 회사 문서에 따르면, 2016년 구글의 소득 이전 금액은 전년 대비 7% 증가하였습니다. 구글 대변인은 "구글은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모든 국가의 세법에 의거하여 모든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온라인 생태계 성장을 돕는데 계속 헌신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구글은 합당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세계 각국의 과세당국으로부터 강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프랑스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상태로 프랑스에서의 광고 수익을 올리는 아일랜드 법인에 대한 프랑스 법원의 판결 후 구글은 11억 2천 만 유로(약 1조 5천억 원)에 대한 납세 의무에서 한 발짝 벗어났으나, EU 는 여전히 비슷한 방법으로 조세피난처를 이용하고 있는 미국 IT 기업들이 적법한 세금을 납부하도록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아일랜드 정부는 2015년 더블 아이리시 방법을 통해 조세조정이 가능했던 세법의 허점을 해결하고, 현재 해당 세법을 사용하고 있는 기업에 한해서만 2020년 말까지 허용해 주는 방향으로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보고된 재무성과를 살펴보면 2016년 구글의 글로벌 실효 세율은 19.3%로, 해외 소득의 대부분은 버뮤다 법인으로 이전되었습니다. 미국 조세전문가인 Robert Willens 는 버뮤다로 이전한 소득은 0%의 법인세율을 적용 받기 때문에 해당 소득에 대해 아일랜드 세율 12.5%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해당상황 하에서 구글은 약 24억 달러(약 2조 5,900억 원)를 절세했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16년 말 기준, 구글은 미국증권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내역에서 미국 법인세나 국외원천세로 인식되지 않고 해외에서 보유하고 있는 금액이 607억 달러(약 65조 5천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도입 법안

지난 몇 년간, 미국 세법은 미국 기업들에게 해외소득이 미국으로 이전될까지 미국 소득세를 이연시킬 수 있는 혜택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개정된 세법은 1) 현금 또는 현금 등가물로 보유하고 있는 소득의 15.5%, 2)비유동자산의 경우에는 8% 세율 중 하나로 현재까지 축적된 해외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미국 기업 중 상대적으로 낮은 글로벌 실효 세율이 적용된 회사는 미국 최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새롭게 개정된 세법에서는 글로벌 실효 세율이 13.125%이상일때는 미국 최저 세율 10.5%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글 아일랜드 법인은 대부분의 해외 광고 매출을 인식한 후 네덜란드 법인으로 자금을 이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시아 태평양 매출의 대부분을 인식하고 있는 싱가포르 법인도 동일한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법인은 법인세가 없으나 미국 외 지적 재산권의 라이선스에 대한 권리를 보유한 아일랜드 법인으로 다시 소득을 이전합니다. 해당 아일랜드 법인은 법인세가 없는 버뮤다 법인을 모기업으로 하는 법인입니다. '더블 아이리시'는 아일랜드에 설립한 두 개의 법인을 통하여 다국적기업 본사가 세금을 최소화 하는 것을 의미하며, '더치 샌드위치'는 두 개의 아일랜드 법인 사이에 한 개의 네덜란드 법인이 도관역할을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Sweden: Timing of data, information to test benchmarking analysis

스웨덴: 벤치마킹 분석을 위한 자료의 시기성에 대한 언급

스웨덴 항소행정재판소(Administrative Court of Appeal)는 이전가격의 정상가격 여부 분석에 사용되는 자료의 시기성과 관련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검토대상연도 및 그 이전 연도의 자료를 사용하는 것은 합당하나, 검토대상연도 이후의 자료는 실제거래 이후에 발생한 상황으로 구성되어 있어 판례에 따라 적절한 정보로 뒷받침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당 사항은 다음과 같은 OECD의 지침서의 내용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 분석자료 검색에 사용될 수 있는 자료의 시기성
- 검토대상연도와 이전 년도 모두의 자료에 대한 접근이 필요한 경우
- 검토대상연도 이후에 사용되는 정보는 특수관계자 간 가격과 관련이 있을 수 있으나, 자료의 소급적용(hindsight) 문제가 발행하지 않도록 유의가 필요

스웨덴 항소행정재판소는 OECD 이전가격지침서에 따라 정상가격 분석 시 다년간의 자료를 사용하며, 해당 자료는 분석대상연도 및 이전연도에 대한 정보가 적용되어야 함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접근이 특수관계자 간 정상가격 분석 시 적용되는 3개년도의 영업이익률에 대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분석대상연도 이후의 자료는 실제거래 이후에 발생한 상황들이 포함되어 있어 보조적인 자료로는 사용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재판소는 분석진행 시 사분위 범위 적용의 중요성을 언급하였으며, 동일한 그룹 내의 기업이 상이한 조세관할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동일한 거래에 대한 분석에서 상이한 범위를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Coca-Cola Wins Foreign Tax Credit Issue in \$3.3 Billion Case (Bloomberg TP Report vol. 27, no.1 pg, 13)

코카콜라 33억 달러 규모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심판에서 일부 승소

코카콜라는 IRS와의 33 억 달러(약 3조 5,600억 원) 규모의 조세심판에서 2억 5,455만 달러(약 2,750억 원)의 외국납부세액공제액에 대하여 승소하였습니다.

IRS는 코카콜라와 멕시코 법인과의 라이선스 거래로 발생한 납부세액과 미지급 세액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금액 중 1억 3,880만 달러(약

1,500억 원)을 부인하였으며, 코카콜라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라이선스 사용을 허여 받은 멕시코 법인은 미국법인에게 무형자산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였고 멕시코 법인은 멕시코 정부에게 2억 5천 만 달러(약 2,700억 원) 이상의 세금을 납부 및 공제 처리하였습니다. 해당 세액은 멕시코 정부와의 2000년부터 2004년까지의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Advance Pricing Agreement) 및 조세 위원회의 자문에 근거한 것입니다. 따라서 코카콜라는 해당 금액을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하였습니다.

코카콜라는 멕시코 정부에 대한 조세부담액을 축소하기 위해 권한 있는 당국과의 절차를 포함하여 효과적이고 실용적인 자구책을 강구하였습니다.

2007~2009년동안 멕시코 법인이 납부한 세액은 미국법인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하기에 충분한 '의무적인' 조세부과액이라고 Albert G. Lauber 판사는 말하였습니다.

의무적 납부(Compulsory Payments)

IRS는 멕시코법인이 미국법인에 지급한 로열티가 정상가격이 아니며 너무 낮은 금액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멕시코법인은 적정 로열티 금액 산정시 지급했어야 할 공제분보다 낮은 공제액 산정으로 인한 초과 세액을 납부하였으며, 해당 세액은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액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납세자는 외국납부세액이 의무적 납부에 해당하는 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코카콜라는 해당사안의 부분적인 요약 판결에 6월 20일에 동의했습니다. 이는 납부세액이 해외 조세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 및 적용되었고, 그러한 방식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납세자의 조세부담액을 경감시켰으며, 코카콜라는 외국세액부담액을 경감시키기 위해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구제수단을 모두 사용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제수단에는 외국납부세액을 경감시키기 위한 권한 있는 당국의 절차가 포함되며, 이는 코카콜라는 추진하려고 하였지만 IRS가 참여를 거부하기도 한 절차입니다.

법원은 멕시코 법인이 해당 조세금액에 대하여 환급을 신청할 경우 해당건은 482조 조정 내용이 아직 판결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환급건에 대한 주장은 이른감이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코카콜라가 멕시코 세법에 따라 적절하게 지불해야 할 로열티 산정시 세무자문위원으로부터의 선의의 조언을 구했다고 말하였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문제는 IRS에 대한 코카콜라의 조세 심판건의 일부이며, 국외특수관계자로의 무형 자산 허여에 대한 라이선스와 관련하여 94억 달러(약 10조 1,520억 원)의 이전가격조정액이 도마 위에 올라와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 33억 달러(약 3조 5,600억 원)의 조세조정 금액이 발생되었으며, 재판은 오는 3월 5일 시작 예정입니다.

[Back to top](#)

[Privacy](#) | [Legal](#)

INTERNAL USE ONLY

27th Floor, Gangnam Finance Center, 152, Teheran-ro, Gangnam-gu, Seoul, Korea

© 2018 Samjong KPMG ERI Inc., the Korea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kpmg.com/socialmedia



kpmg.com/app

